



제202.5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COVID-19로 인한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OVID-19 비상 재난에 가장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신속하게 모든 물품, 서비스, 전문 인력, 자원 봉사 인력을 소집하여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 본인은 비상 상황 기간 동안 명령, 지방법, 규율, 명령, 규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비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연기, 또는 이러한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명령, 지방법, 규율, 명령, 규제,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 혹은 개정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부법 제2-B조 29-a항에 의거해, 본인은 행정명령 일자인 2020년 4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중단 또는 연기합니다.

- 미국 모든 주의 양호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뉴욕주에서 면허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Education Law) 제6512조에서 제6516조, 제6524조, 그리고 뉴욕주 주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8장 60절.
- 현재 뉴욕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뉴욕주에서 면허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6502조 및 NYCRR 8장 59.8절.
- 미국 모든 주에서 적법한 일원이며 면허를 가진 등록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 및 간호사가 허용하는 데 뉴욕주에서 면허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6512조에서 6516조, 6905조, 6906조, 6910조, NYCRR 8장 64조.
- 미국 모든 주에서 적법한 일원이며 면허를 가진 의료 조무사가 뉴욕주에서 면허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제6512조부터 제6516조, 제 6541조 및 NYCRR 8장 60.8절.
- 비상 사태로 피해를 받은 환자가 보건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은 28조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NYCRR 10장 400.12조.
- 재난 비상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을 수용하는 양로원이 해당 장소로 임시 대피하는 거주민에 대한 종합 평가를 승인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거나 그들이 대피한 시설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도록 허용하는 범위에서 NYCRR 10장의 415.11조.
- 비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수용하는 양로원이 시설에 들어온 후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승인을 얻거나 벗어난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는 승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범위까지 NYCRR 10장의 415.15조

부속조항 b.

- 비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수용하는 양로원이시설에 들어온 후 가능한 한 빨리 승인 절차를 준수하거나 나가야 하는 시설로 돌아가려는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포기하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NYCRR 10장 415.26조의 부속조항 i.
- 비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받은 가정 치료 기관, 장기 자택 건강 관리 프로그램, 에이즈 자택 돌봄 프로그램, 등록된 홈케어 서비스 기관이 초기 서비스 방문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택 보건 지원이나 개인 돌봄을 자택에서 관리감독하거나 전화나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대면 및 자택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NYCRR 10장 766.5조 부속조항 D 1항, 763.4조 부속조항 g 2항, 763.4조의 부속조항 h 7항 및 8항, 766.5절 2항.
- 비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받은 가정 치료 기관, 장기 자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에이즈 자택 돌봄 프로그램이 48시간 이내에 지역사회 추천에 대한 수령 및 승인을 하거나 기관 배치로부터 자택 복귀를 허용하게 하는 범위까지 NYCRR 10장 763.5조 부속조항 a.
- 가정 돌봄 서비스 단체가 홈 케어 워커 레지스트리(Home Care Worker Registry)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범위까지 NYCRR의 10장 403.3조 및 403.5조.
- 모든 공청회의 참석을 서면, 전화, 동영상,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허용하거나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8장 358-4.3절, 358-5.12조 및 358-5.13조.
- COVID-19 확진자나 노출자가 거주하는 1차 거주지에 대하여 이러한 시설의 청소 및 소독 비용을 보건 커미셔너의 재량 내에서 의료 보상 기금(Medical Indemnity Fund) 등록자에게 상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공 보건법(Public Health Law)의 2999-h조 및 2999-j조.
-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가졌으며 공공 보건법과 NYCRR의 이러한 조항에 따르는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다른 주에서 주정부의 가용한 법과 규제에 따르는 시설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직원이 뉴욕주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공공 보건법 2805-k조, NYCRR의 10장의 405.4조, 405.5조, 405.9조, 405.14조, 405.19조, 405.22조, 405.22조 및 405.22조.
- 일반 병원의 기존 정책 및 절차를 COVID-19 대응 기간 동안 환자 치료 목적으로 신설된 임시 시설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0장 405절.
- 보건부 커미셔너 또는 개발장애인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아 제공되는 물리적 공장, 병상 용량 및 서비스, 임시 병원 위치 및 확장, 병상 용량 제한의 증가 및/또는 초과, 임시 병원 위치 및 확장 시설의 건설에 대한 임시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건축, 에너지 절약 혹은 기타 건설 규정, 모든 주정부 및 지역 정부법, 조례, 규정.
- 보건 커미셔너가 승인할 때까지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으로의 이동 및 출석 금지에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461-k조 및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 Law) 10장 425절.
- 개발장애인청이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인증을 중단 또는 제한하는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 16.17조.
- 데이 프로그래밍 및 기타 지역사회 기반으로 진행되며 참여해야 하는 개인의 서비스 계획으로 부터 임시적으로 벗어나는 데 필요하는 범위까지, 그리고 이 비상 기간 동안 개인의 보건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두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4장 633.12조 및 636-1조.
- 정신위생법 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시설의 방문을 제한하고 이러한 시설의 주민에게 COVID-19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외출 제한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정신위생법 33.02조, 33.05조 및 NYCRR 14장 633.4조, 636-1.4조, 633.16조.
- 정신위생법 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시설 및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접 지원 전문 인력의 훈련 간소화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4장 633.8조 및 633.14조.
- 정신위생법 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시설 및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접 지원 전문 인력의 의약품 훈련 간소화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14장 633.17조.
- 아동 보호에 대한 배경 조사 의무와 관련된 조례와 규제에 한하여 NYCRR 18장 413.4조 및 415.15조, 사회보장서비스법 390-b조.
- 보호를 제공 경험이 있고 초등학교 또는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위치한 학교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연령 보호 프로그램을 면제하는 한 아동 사무실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한하여 사회보장서비스법 제390조.
- COVID-19 혹은 2020년 3월 12일을 기하여 이러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정부 단체의 의무 명령으로 인한 고용 중단 때문에 실업 보증을 신청하는 실업 보험 신청인의 대기 기간과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노동법(Labor Law) 590조 부속조항 7 및 607조 부속조항 2항.

- 사업체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원들이 이러한 거래가 회원들에게 승인 받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전자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전자 동의에 따라서만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기업법(Business Corporation Law) 제708조 부속조항 b항.
- 대면 공청회가 전화 회의 또는 유사한 전자적 수단을 제공하며 공청회를 녹취 및 기록하는 한 이러한 공청회를 열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공공 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 65(13)(b)조 및 66(12)(f)조.
- 공공 청문회가 대중에게 최종 명령을 발령하기 전 공공 서비스법 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서면 의견을 받는 한 이러한 청문회를 열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공공 서비스법(이하 "PSL") 제165(1)조.
- 최종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PSL VII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서면 의견을 받는 한 공청회를 열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PSL 제123(1)조.

따라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재난 비상 상황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지시합니다.

- 2020년 3월 18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모든 빌리지 선거를 연기하고, 해당 직위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새로운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해당 직위를 유지합니다.
- 2020년 3월 19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소매 공간이 100,000 평방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임대 실내 소매점은 문을 닫고 일반 접근을 중단합니다. 외부로 통하는 자체적인 출입구가 일반적인 몰 출입구와 분리되어 있는 쇼핑몰 내 상점의 경우, 행정명령 202.3항의 의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공통 구역으로 향하는 내부 문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에 한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놀이기구, 카니발, 농이공원, 워터파크, 수족관, 동물원, 아케이드, 박람회, 어린이 놀이 쉼터, 핀플렉스, 테마파크, 볼링 앨리, 가족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공 오락 시설은 3월 19일 오후 8시를 기해 함께 폐쇄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공공 공원 및 개방된 레크리에이션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부법 24조와 관계없이, 어떤 지역 또는 정치적 부속 기구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승인없이 COVID-19의 대응과 관련된 지방 비상 명령 혹은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해서 이 명령을
발표합니다.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Andrew Cuomo".

주지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Ms. C".

주지사 비서관